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24
----------	-------

발의연월일 : 2026. 2. 3.

발 의 자 : 박홍배 · 박균택 · 박 정
윤종균 · 임오경 · 윤준병
김태선 · 이수진 · 진성준
이용우 · 박정현 · 민병덕
박희승 · 안호영 · 김남근
강준현 · 전진숙 · 강득구
복기왕 · 최혁진 · 김우영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열에너지의 탄소중립을 위해 지열, 수열, 공기열 히트펌프 등 청정열원의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법령은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게 주택단지 조성 시 가스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히트펌프 등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을 가로막고 있음. 특히, 냉·난방 자립이 가능한 주택단지 등에 대해서도 가스 배관망 설치를 강제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중복 투자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친환경 난방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단지 등에 대해 가스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여 열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와 사업주체가 해당지역의 난방 및 급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으로 적용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 ----- ----- ----- ----- ----- ----- ----- ----- ----- ----- ----- ----- ----- ----- <u>경우와 사업주체가 해당지역의 난방 및 급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으로 적용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 3.(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